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나128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나12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소23045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소23045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 당첨되어, 1) 2013.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는 F에게 그 대가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위 돈에 임차보증금 상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다. 이후 F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해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임차권 양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명의 변경(G단지 E호) 준비 서류 일체 및 프리미엄 일부로 일천만원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또는 임차인 명의변경)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7. 2. 26. 원고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1. 명의변경시 직장사퇴시 500만원 지급하고(2017. 2. 26.), 명의변경 접수시 일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변경 승인시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2.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행각서)2)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기 위해 F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고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로 6,0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위 임차권 양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게 두 번에 걸쳐 지급한 합계 1,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임차인 명의변경) 대가이고, 즉 그러한 내용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위 약정이 어떠한 사유로 소멸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3) 위 1,500만 원의 수수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도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 판사 이원중

1) F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된 것으로 보인다.

2) 확인서(이행각서)에 기재된 위 각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모두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위 약정 자체가 사법상 효력이 있으므로 1,500만 원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다.